

第62回 (閉會中)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鍾路區 淨化槽 代行業에 관한 第5號
行政事務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 9월 18日(水) 09時 23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議事日程

1.鍾路區 淨化槽代行業에 관한 行政事務調查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

審査된 案件

1.鍾路區 淨化槽代行業에 관한 行政事務調查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 1 面

(09時 23分 開議)

○委員長 丁昌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위원 9명 중에 6명의 위원님이 참석했으므로 제5차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화조에서 풍기는 악취를 맡으면서 또 모기나 물 것에 물려가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정화조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악하여 정화조로 인한 구민의 민원, 숙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를 갖고 임해주신 데 대해서 많은 보고서 채택 사항을 적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위원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결과 배포된 조사 보고서를 참고로 하시면서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 첫째, 조사 배경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 구조례 규정에 의거 정화조 청소 업무는 대행업자를 허가하여 그 업자로 하여금 정화조 청소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는 바 종로구의 경우는 1979년 5월 1일

환경개발주식회사에 허가하여 현재까지 16년간 독점 대행케 함으로써 독점업자의 폐해가 만연되어 급기야 대행업 대표가 부당요금 편취로 구속되어 이르는 등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조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청소업의 횡포와 관련 제도적, 실제적 운영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조사하고 제도상, 운영상 미비점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시민국 청소과와 환경개발주식회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96년 6월 7일 정화조 대행업 대표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으며, 동년 8월 5일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사권 발동이 발의되었습니다. 동년 8월 13일 본회의 조사계획서가 의결되었으며, 동년 8월 14일에서 9월 1일까지 자료준비가 있었습니다. 동년 9월 2일 시민국과 환경개발주식회사의 현황 청취가 있었으며, 동년 9월 2일에서 9월 7일 관련자료 요구 및 정화조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동년 9월 9일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동년 9월 10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년 9월 11일에서 9월 13일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동년 9월 13일 이후 보고서 채택 및 임시회의의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조사 실시 경과는 조사

반이 편성되었습니다. 제1소위원회委員長은 洪起瑞委員長님과 千相旭委員, 羅在岩委員, 李萬魯委員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관사항은 정화조 개선명령(허가사항) 적정 여부가 심사되었으며, 정화업자 허가서류가 검증되었고, 시료채취 실시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제2소위원회는委員長으로는 朴文培委員長님과 玄孝善委員, 朴鍾植委員, 鄭泰淳委員 4인으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소관사항으로는 정화조에 대한 표본조사와 정화조 수거시 적정성 여부, 또 기간내 수거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조사반은 위원장으로 본 위원장인 丁昌熙委員長과 幹事로서 朴文培委員長님께서 그동안 헌신적인 봉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한 보조직원으로서 專門委員 蔣昭秀, 議事係長 吳益煥, 박종수주임, 이윤식주임, 전용, 구상미, 유연숙, 김세영, 최기노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주요 조사실시 내용으로는 환경개발주식회사의 파악이 있었으며 분뇨관련 50인조 이상의 현황이 파악된 바 있습니다. 분뇨관련 행정처분 현황이 조사되었으며, 분뇨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사항이 실사되었습니다. 정화조 청소 실시대상 및 계획추진사항을 점검한 바 있었으며 정화조 시설이 기준에 위반하여 처리한 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의무 미이행자 처리사항에 대한 결과 파악도 있었으며, 건축 허가시 정화조시설 설치 및 준공 현황 등이 파악되었습니다.

관련 현황으로는 대행업체에 대한 현황으로써 업체명 환경개발주식회사에 대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유성제씨이고, 허가일시는 1979년 5월 1일입니다. 직원 현황은 사무직 8명, 별정직 2명, 운전원이 정화조에 12명과 재래식에 2명, 미화원이 정화조에 12명과 재래식에 2명씩 총 38명이었으며, 장비 현황으로는 16톤이 1대, 14톤이 1대, 11톤이 1대, 5톤이 3대, 4.5톤이 3대, 4톤이 2대, 2.5톤이 2대해서 도합 13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보수 현황은 '95년 5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환경미화원이 구청측의 월 평균 보수

가 173만1,369원인데 반하여 환경개발주식회사의 환경미화원 보수는 115만9,319원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구청측의 보수가 169만2,877원인데 반하여 환경개발주식회사는 143만8,287원으로 약 26만원에서 50만원 이상에 달하는 보수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차고지 현황은 소재지가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 673번지 일대에 서울특별시로부터 정화조 협회에서 일괄 임차한 면적 중에 약 150평이 환경개발주식회사에 할당되어 점용하고 있었습니다.

분뇨·정화조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정화조 현황은 '95년에 정화조가 대상 2만3,671개소에 7만2,554kl를 수거하였으며 1일 평균치로는 198.7kl에 해당됩니다. 분뇨는 4,569개소에 '95년도 실적은 3,154kl이며 1일 평균치는 8.6kl입니다. 도합 정화조와 분뇨의 처리 합계는 2만8,240개소에 '95년도 실적은 7만5,708kl이고 1일 평균치로는 207.3kl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분뇨·정화조 처리 허가업체 현황은 서울시 전체 3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대행해서 청소하고 있는 구는 17개 업체이고 또한 17개 구입입니다. 2개 업체가 대행해서 청소하고 있는 구는 8개 업체이고 중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관악구 8개 구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체계는 광역처리체제로서 수집 및 운반은 구청장이 대행업체에 대행을 하고 있으며 처리는 시장이 관장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 절차는 주민이 신고를 하여 청소일자를 약속하고 수거를 실시한 후에 영수증을 발급하고 처리장으로 가서 계근하여 투입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처리능력 대비 처리 현황은 정화조 차량이 10대로 인력이 24명입니다. 1일 평균은 313kl로 연간 11만4,245kl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95년도 현황은 1일 평균은 198.7kl로 연간 7만2,554kl입니다. 분뇨 차량 3대에 인력이 4명으로서 처리 능력은 1일 평균 23kl로 연간 8,395kl의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처리 현황은 1일 평균 8.6kl로 연간 3,154kl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화조 차량 용량의 합계는 73

kl이고 분뇨 차량 용량의 합계는 9.5kl입니다. 분뇨관련 행정처분사항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파악하였습니다. 대행업체는 환경개발주식회사이고 처리일자는 '95년 5월 25일입니다. 행정처분 사유는 정화조 청소요금 기준 초과 정수로 행정처분 결과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시키고 경고 조치한 바 있는 단 한 건 있을 뿐입니다. 분뇨관련 민원 및 진정사항 현황은 '9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진정인은 고재수, 소재지는 팔판동 115-20번지입니다. 접수일자는 '95년 3월 10일이고 처리일자는 동년 3월 14일입니다. 진정 사유는 정화조 청소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화조 진정인은 당주동 113번지에 접수일자는 '95년 3월 27일이고 처리일자는 '95년 3월 30일자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진정 사유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조규중 진정인은 창신동 23-422에 소재하고 있으며 '95년 5월 10일 접수되어 '95년 5월 25일 처리된 바 있으며, 진정 사유는 정화조 청소요금 기준 초과에 대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유재성 진정인은 신문로 1-117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95년 7월 14일 접수되어 '95년 7월 24일 처리되었으며 진정 사유는 정화조 청소에 대한 건의사항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김화조 진정인은 내수동 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95년 9월 16일 접수되어 '95년 9월 26일 처리되었으며 진정 사유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탄원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박희출 진정인은 구기동 149-1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95년 10월 16일 접수되어 '95년 10월 23일 처리된 바 있습니다. 진정 사유는 정화조 청소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화조의 설치에 대한 법률입니다. 별첨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분뇨관련 영업에 대한 법률입니다.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결격사유에 대한 법률입니다. 별첨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과태료에 대한 법률입니다. 별첨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법률입니다. 별첨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법률입니다. 별첨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3항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법률입니다. 별첨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종로구 삼청동 25번지 삼청교육연수원이 준공량은 110m³이나 실용량은 50m³, 종로구 운니동 114번지 덕성여대 정화조도 준공량은 110m³이나 실용량은 60m³가 되는 등 관내 상당수 업체가 상기와 같은 사례가 예상되며 따라서 50m³ 이상 정화조에 대하여는 일제 조사하여 공부상 용량과 실용량이 차이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할 것이며, 정화조는 있으며 정화조 관리대장에 누락된 명륜2가동 21-9 외 6건이 용도변경한 34건에 7건이 적출된 바 전 등에 이러한 사례가 예상되니 전수 조사하여 누락된 사항은 대장에 등재하여 효과적인 수질 관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화조가 미설치된 건물을 일제 조사하여 정화조 설치를 촉구하고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할 것이고,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가 '94년에 1,780건 '95년에 2,522건으로 자료 제출된 바 정화조 청소 미이행으로 수질 오염은 물론 과태료의 추가 부담을 주민에게 부과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자가 환경친화적 업무로 그 중요성이 새로이 인식됨에도 기구는 종전 1개 계 위생설비계가 하던 업무를 1인이 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력 보충 등 제도적 검토를 요합니다. 환경개발주식회사의 환경미

화원 월 평균 급료가 115만9,310원으로 구청 미화원 월 평균 급료 173만1,369원보다 월등히 적어 부정을 유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행정직 8명 인원을 감소하더라도 처우를 획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가 있어 허가취소의 사유가 됨에도 환경개발 임원의 임용시는 신원조회에 관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작업일지상 월 수거용량과 난지도 처리장의 월 폐기량이 1996년 3월의 경우는 151.18t, 1996년 4월의 경우는 186.68t 등이 작업일지상 수거량이 폐기량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되는 바 폐기량보다 수거량이 많다는 것은 수용가에게 계기 이상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바 이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매월 수거량과 폐기량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50인조 이상 정화조 입력 자료가 오류가 있어 즉 정화조 용량란에 청소량이 입력되었거나 그대로 용량이 입력된 부분이 있는 등 50인조 이상 총 124건에 58건의 자료가 오류 입력되어 이 자료에 의거 청소통지서상 예정 수수료가 통보될 경우 터무니없는 금액이 통보될 소지가 있으니 컴퓨터 자료의 수정 재입력이나 적정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정화조 청소차량의 청소요금은 차량에 부착된 계기에 의거 물량 측정을 하여야 하나 차량이 경사면에 주차 수거할 경우는 계기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부정확할 소지가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여 요금시비 요인이나 수용가 불이익 소지를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개발주식회사 사무직 남자직원의 빈번한 교체로 업무 파악이 잘 안되는 등 인사 관리에 문제가 있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불합리성이 대두되므로 이점 시정을 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적출된 본 위원회의 건의사항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법 개정사항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화조 내부청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8조는 위 내부청소를 미이행하였을 경우는 최고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렇게 될 경우 100톤 이상의 수용가는 내부청소 수수료보다 과태료를 적게 부과하게 되는 모순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법 제58조 과태료 규정을 아래 요금산정표를 참고해서 개정이 요구됩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의 수수료 산출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건설부령 개정은 건축법 시행규칙 건설부령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 설치된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비서류로 평면도, 용도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도서만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화조 용량의 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당초 주택에서 타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정화조 용량의 증대가 이루어질 때 이에 대한 보완책이 없으므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개정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조례 개정은 과태료 부과기준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조례 별표4에 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1일 처리용량 200t 미만은 1차 20만원, 200t 이상은 1차 50만원으로 규정하여 기본용량인 수용가는 수수료의 12배, 200t 이상자는 수수료보다 적은 과태료를 부담하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이의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둘째, 개선 방법은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개정함이 명분이 타당할 것이라고 검토됩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번째, 구 규칙 개정 사항입니다. 정화조 청소통지문이 수용가에게는 고지서로 인식되고 있어 통지문상의 청소요금 표시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은 용량에 의한 일률적 금액이 표시되고 수용가의

용량에 의한 금액이 수수료가 명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는 사항은 용량에 의한 최고 또는 최하 금액 표시 및 수수료 산정방법을 정확하게 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청소통지문 양식 변경을 시행하도록 청소과 규칙사항을 변경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정화조 관련 업무는 자연환경보존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는 수질 보존이나 환경보전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며 모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도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어 본 업무의 효과적 집행을 위하여는 상당한 인력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조사위원회에서 시정 요구한 제반사항도 그 시정사항을 이행함에는 상당한 인적 동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점을 집행부에서는 인식하여 시정 요구사항 치유에 각 동 조직이나 각과의 인력을 한시적으로 집중 활용하는 등 기관장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별첨 첨부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보고서는 유인물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玄孝善委員 말씀하십시오.

○玄孝善委員 우선 대중 내놓기 전에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좋을지 한번 기탄없이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委員長 丁昌熙 玄孝善委員님께서 보고서 채택에 앞서서 잠시 토론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羅在岩委員 말씀하십시오.

○羅在岩委員 재청인데요, 그래도 한번 걸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더라도, 그래서 그 절차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재청입니다.

○委員長 丁昌熙 그러면 우리가 공개 토론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비공개로 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時 50分 會議中止)

(09時 58分 繼續開議)

○委員長 丁昌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사보고서는 유인물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조사보고서는 위원장이 제63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간 우리 特別委員會 委員님들의 노력이 20만 종로구민의 편익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5차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時 00分 散會)

○出席委員 7人

丁昌熙 朴文培 玄孝善 千相旭 朴鍾植
鄭泰淳 羅在岩

○出席 專門委員

蔣昭秀

